#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WI 68 = 1		(단취: 영)	
시험명	시험 방법		발 예정		시 험 과 목	
	망띱	직렬(직류)	직급	인원		
	총계			615		
	공 경 용 임 점	교육행정	9급	465		
		교육행정 (장애인)	9급	5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14		
		전 산	9급	2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급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제2회		공 업 (일반기계)	9급	1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9급	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 건	9급	18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9급	1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9급	1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분	5과목
시험시간	<b>100분</b> (10:00 ~ 11:4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3 응시 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적용 기준일 : 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 <u>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을 기준</u>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2024년부터 연구사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변경

####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계산 방법은 「민법」제160조에 따름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라.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합병원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기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 ②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 (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 (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u>수급기간 명시</u>), 한부모가족증명서(<u>지원기간 명시</u>)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문의

#### 바. 자격증 제한 [사서 직렬]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구분	직렬(류)	직급	자격증 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사서	9급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 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자격증 제한 폐지 및 자격증 가산점 적용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시)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4.15.(월) 09:00 ~ 4.19.(금) 18:00	필기시험	5.27.(월)	6.22.(토)	7.26.(금)
	[취소마감일시 : 4.22.(월) 18:00]	면접시험	7.26.(금)	8.24.(토)	9.5.(목)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인사/채용 /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험장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응시자의 생활근거지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rightarrow$  '지방공무원'선택  $\rightarrow$  지도에서 '경기도교육청' 선택  $\rightarrow$  로그인  $\rightarrow$  원서접수  $\rightarrow$  응시분야 선택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나. 응시수수료: 5,000원(9급)
-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되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 접수 가능)

####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M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사진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임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함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이미 현상된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 사용 불가
    -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 마. 응시표 출력ㆍ지참

○ 응시표는 아래 응시표 출력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응시표 출력기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5. 27.(월) 10:00 ~ 6. 22.(토) 10:00까지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바. 유의사항

- ○【수정·취소】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입력 가능)
-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 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 【자격요건 확인】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PC환경】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 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서 직렬은 제외)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 행정	교육 행정	-	변호사	5%
전산	전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지격증 가산비율 적용: 목타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E0/
		기 사 : 전자계산기, 연고당는, 영고자리, 근자대는지고 183,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지작전문가 -	5%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3%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5%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일반 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5%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보건	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2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라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5%	
		기 능 사 :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3%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식품 위생	식품 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Tlö	TIÖ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5%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3%
시설	일반 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5%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기산 비율 적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5%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i>J</i> /0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sup>※</sup>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기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하단 등록기한 참고)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한(등록기한내 미등록시 가산점 미인정)

구분	가산점 등록 기한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4. 6. 24.(월) 18:00까지

###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 번호 또는 증서 번호) 등을 잘못 입력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가. 적용직류: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58호)」을 참고

## 8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9 합격자 결정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단, 선발 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내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소명 절차에 대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 10 문제 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과목수	출제과목	공개여부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19개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중보건, 보건행정,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개 (문제책 미회수)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2개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비공개 (문제책 회수)

○ <u>식품위생 직렬</u>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하며, **문제는 비공개하므로**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 필기시험일이 2024.6.22.인 경우, 2024.4.30. 현재가 기준이 됨.

## 11 응시자 유의사항 등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르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휴대가능 시계는 <u>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u>로서 통신·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u>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u> 시계이며,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접수기간: 4. 15.(월) 09:00 ~ 4. 22.(월)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031-820-0572~0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

##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

변경 전(현행)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기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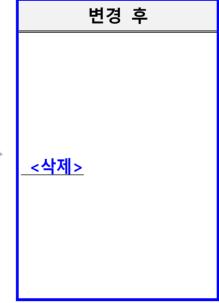
	변경	후
--	----	---

-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 삭제

-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 삭제

직렬	변경 전(현행)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 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전산직렬 응시자격증 삭제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직렬 변경 전(현행)
전산 해당없음

변경 후		
자격증	가산 비율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5%(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멀티 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b>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b> <b>기능사</b>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3%(기능사)	

## ○ 신규임용시험(연구사) 응시연령 하향

변경 전(현행)	
연구사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

	변경 후		
-	연구사 · 9급	18세 이상	

## □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 인사혁신처 출제 9급 공무원 시험(국어, 영어) 출제기조 전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a href="https://www.goe.go.kr">https://www.goe.go.kr</a>)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게시판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국어, 영어 과목 출제기조 전환 안내」게시물 참조
-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a href="https://www.goe.go.kr">https://www.goe.go.kr</a>)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 공고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u>원서접수</u>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O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②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경기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u>방문 또는 등기우편(</u>제출마감일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 제출기간 : 2024.4.15.(월) 09:00~2024.4.22.(월) 18:00까지

- ▶ 제출서류
- 1) 편의지원 신청서 1부(서식 1~5 참조)
- 2) 장애인증명서 1부(인터넷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3)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제출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 제공여부 문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 031-820-0572~0575

### ③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 1. 아래 ④항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편의지원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점자문제지(답안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과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점자문제지는 2020년 개정된「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제공합니다.
- 3.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만 제공됩니다.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래 ⑤)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5.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031-820-0572~0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④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자에오취미저드			필기시험		ul =
장애유형 및 정도		상애규영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제출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 지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3 VII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6급
	하 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6급
뇌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병 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1~3급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시람		· 답안지 대필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4~6급
	징	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공통		· 확대문제지 ·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 정도기 심하지		시임시간 현영(선택영 1.7배)   . 으서지의커프티 . 저지므제지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1~2급 기존 3급 2호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 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시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3급 1,2호
시각 장애		·두 눈의 시아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아하로 남은 시람 중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시람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ul><li>편의지원 신청서 1부</li><li>장애인증명서 1부</li><li>의사진단서 1부</li></ul>	기존 - 4급 2호
경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48 23
		가 <u>사람</u>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4,5급 1호
		<b>자</b>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5급 2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6급
청각 장애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기존 2~6급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ul><li> 편의지원 신청서 1부</li><li> 장애인증명서 1부</li><li>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li></ul>	
기타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시험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	

※해당 항목 장애유형(기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5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발급일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4년 4월 19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22년 4월 20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급 2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상기인은 시각장에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않은 자(기존 6급 중 좋은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 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상기인은 <b>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b> 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서식 1. 편의지원 신청서(뇌병변・상지 지체장애) 1부.
  - 2. 편의지원 신청서(하지 지체장애) 1부.
  - 3. 편의지원 신청서(시각장애) 1부.
  - 4. 편의지원 신청서(청각장애) 1부.
  - 5. 편의지원 신청서(기타장애 및 임신부) 1부.